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무관서에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89명(6급104, 7급113, 8급154, 9급118)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1.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 정보관리관실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법인납세국·조사국 및 주류면허지원센터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한편,

소득자료 신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자료신고팀을 신설하고, 소득자료 분석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득과약팀의 명칭을 소득자료분석팀으로 변경하며, 전국 세무관서 청사 관리 업무 및 국세청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체납추적 기능 강화 및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6명(6급 6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증원하였던 민간전문가(에디터) 1명(7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9급 2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27명(9급 27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19. ~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전산기획담당관·정보화1담당관·정보화2담당관·정보화3담당관”을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엔티스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으로,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및”을 “정보화기획담당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을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조직 관리 및 교육
3.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4. 국세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업무 총괄
5. 과세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업무
6.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7. 전자서고, 전자팩스, 전자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8. 우편물자동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화센터에 대한 관리

10. 그 밖에 관내 다른 센터·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기획담당관”을 “빅데이터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빅데이터센터의 운영
3.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유지·관리
4.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5. 빅데이터 및 정보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제3조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1담당관”을 “엔티스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세청 내부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의 전산 시스템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국세행정시스템의 긴급개발 업무
5.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6. 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 민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7. 국세행정시스템의 징세 및 각종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 관리

8.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2담당관”을 “홈텍스1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홈텍스, 모바일홈텍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2.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결의, 세적(稅籍) 등 공통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제3조제6항제4호 중 “징세, 원천세 및 공통 민원 관련 프로그램의”를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관련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3담당관”을 “홈텍스2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 재산세”를 “법인세, 소비세, 국제세원, 원천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연말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4. 근로장려세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제4조의3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소득과약팀)”을 “(소득자료신고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과약팀장”을 각각 “소득자료신고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과약 업무”를 “소득자료 신고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자료신고 관련 홍보 및 교육 업무

3. 소득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소득자료분석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소득자료분석팀장 1명을 둔다.

② 소득자료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득자료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득자료 분석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소득자료 관련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

3. 소득자료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업무

제8조제4항제2호 중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사후관리”를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을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한한다)에 관한 계획수립·관리 및 평가

제9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분석”을 “실태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전심의 업무”를 “품질에 관한 관리 및”으로 한다.

3. 국제거래 분석 및 관리

제16조제3호 중 “연구소”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조주류”를 “가짜주류”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주조기술”을 “주류제조 기술”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양조시설”을 “주류제조 시설”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24명”을 “25명”으로, “6명”을 “7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102명(6급 44명, 7급 1명, 8급 57명)”을 “109명(6급 50명, 7급 2명, 8급 57명)”으로 한다.

별표 2 부산지방국세청의 울산광역시의 울산세무서의 관할구역란 중 “청량면”을 “청량읍”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18”을 “919”로 하고, 일반직계 “914”를 “915”로 하며, 세무주사보 “165”를 “16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19,982”를 “20,47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932”를 “20,421”로 하며, 일반직 계 “19,932”를

“20,421”로 하고, 세무주사 “4,235”를 “4,339”로 하며, 세무주사보 “4,429”를 “4,542”로 하고, 세무서기 “5,246”을 “5,400”으로 하며, 세무서기보 “3,525”를 “3,662”로 하고,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7”을 “33”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150”을 “151”로 하고, 운전서기보 “158”을 “159”로 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5”를 “3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67”을 “442”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20,084”를 “20,580”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034”를 “20,530”으로 하며, 일반직 계 “20,034”를 “20,530”으로 하고, 세무주사 “4,273”을 “4,383”으로 하며, 세무주사보 “4,430”을 “4,544”로 하고, 세무서기 “5,268”을 “5,422”로 하며, 세무서기보 “3,525”를 “3,662”로 하고,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7”을 “33”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150”을 “151”로 하고, 운전서기보 “158”을 “159”로 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5”를 “3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67”을 “442”로 한다.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9명	
10)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세무서)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1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구로서 제4조의4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소득자료분석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득자료신고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4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1명 및 세무주사보 2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1명(세무주사보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세무주사 3명 및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세무주사보 2명과 별표10의2의 세무주사 6명은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산정보관리관) ① (생략)	제3조(전산정보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전산기획담당관·정보화1담당관·정보화2담당관·정보화3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 각 1명을 두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정보화 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엔티스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 ----- 정보화기 획담당관 및 -----
③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③ 정보화기획담당관-----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청빅데이터센터의 운영	2.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조직 관리 및 교육
3. 빅데이터 및 정보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3.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4.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관	4. 국세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u>리 및 분석</u> 5.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관리·교육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전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조직 관리 3.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4. 국세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u>업무 총괄</u> 5. 과세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업무 6.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7. 전자서고, 전자팩스, 전자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8. 우편물자동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화센터에 대한 관리 10. 그 밖에 관내 다른 센터·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빅데이터센터장----- ----- ----.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빅데이터센터의 운영 3.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유지·관리 4.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	<u>및 운영 업무 총괄</u> 5. 과세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업무 6.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7.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8. 전자서고, 전자팩스, 전자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9. 그 밖에 관내 다른 센터·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정보화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생 략) 2.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과세자료, 세적(稅籍) 등 공통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의 법인세, 소비세, 근로장려세제 및 각종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u>원</u> 5. 빅데이터 및 정보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⑤ 엔티스담당관----- ----- ----. 1. (현행과 같음) 2. 국세청 내부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의 전산 시스템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	--

<신 설>	4. 국세행정시스템의 긴급개발 업무	4. 국세행정시스템의 징세, 원천 세 및 공통 민원 관련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4. -----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관련 프로그램 - -----
<신 설>	5.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데 이터베이스 등 관리	⑦ 정보화3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 좌한다.	⑦ 홈택스2담당관----- ----- -----.
<신 설>	6. 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 민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부 가가치세, 재산세 관련 프로 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 ----- 별 인세, 소비제세, 국제세원, 원 천세 -----
<신 설>	7. 국세행정시스템의 징세 및 각종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 발 및 유지·관리	2. 모바일 홈택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삭 제>
<신 설>	8.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 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 리	<신 설>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프 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⑥ 정보화2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 좌한다.	⑥ 홈택스1담당관----- ----- -----.	3. 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 증,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프로 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2. 연말정산 ----- --
1. 국세청 내부포털시스템의 운 영 및 유지·관리	1.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4.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 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 리	4. 근로장려세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2.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결 의, 세적(稅籍) 등 공통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관리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 한다.	⑧ ----- ----- -----.
3. 국세행정시스템과 다른 행정 기관의 전산 시스템 간의 연 계에 관한 사항	3. 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 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관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우편물자동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삭 제>
		8. 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	<삭 제>

<u>화센터에 대한 관리</u>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 ③ (생략)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u>	<u><삭 제></u>
<u>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u>	<u><삭 제></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소득과약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u>소득과약팀장</u> 1명을 둔다.	제4조의4(소득자료신고팀) ① -- ----- ----- ----- <u>소득자료신고팀장</u> ----.
② <u>소득과약팀장</u> 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u>소득자료신고팀장</u> ----- -----.
③ <u>소득과약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 <u>소득자료신고팀장</u> ----- -----.
1. <u>소득과약 업무</u> 의 집행 및 관리	1. <u>소득자료 신고업무</u> ----- --
2. <u>소득과약 업무</u> 의 홍보·교육 및 민원 업무	2. <u>소득자료신고 관련 홍보 및 교육 업무</u>

<u>3. 소득과약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u>	<u>3. 소득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u>
<u><신 설></u>	제4조의5(소득자료분석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u>소득자료 분석팀장</u> 1명을 둔다.
	② <u>소득자료분석팀장</u> 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u>소득자료분석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u>소득자료 분석업무</u> 의 집행 및 관리
	2. <u>소득자료 관련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u>
	3. <u>소득자료 관련 법령·제도 개선 업무</u>
제8조(법인납세국) ① ~ ③ (생략)	제8조(법인납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및 사후관리</u> 에 관한 업무	2. <u>공익법인 -----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 (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u>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u>	1. ----- ----- ----- ----- <u>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⑥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국) ①·② (생략)	제9조(조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내국세 법칙사건에 관한 분석 및 관리	5. 내국세 조세법칙조사(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한한다)에 관한 계획수립·관리 및 평가
6. 내국세 법칙사건에 관한 심	<삭 제>

<u>리·조사 및 처분</u>	
7. (생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원단위 및 생산수율의 조사</u>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u>	3. <u>국제거래 분석 및 관리</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과세 취약분야 <u>분석</u> 및 관리	1. ----- <u>실태분석</u>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세무조사 <u>사전심의 업무</u> 지원	4. ----- <u>품질에 관한 관리</u> 및 ---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분석감정과)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연구소</u> 업무의 기획 및 조정	3. <u>센터</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위조주류</u> 의 분석·감정 및 정보 제공	5. <u>가짜주류</u>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기술지원과) ----- -----.
1. <u>주조기술</u> 의 개선·지도 및 연구	1. <u>주류제조 기술</u> ----- --
2.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 -----.
1. <u>양조시설</u>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u>주류제조 시설</u>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u>24명</u> (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세무주사보 <u>6명</u> ,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학예연구사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u>25명</u> ----- ----- ----- <u>7명</u> ----- ----- -----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u>102명(6급 44명, 7급 1명, 8급 57명)</u> 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 ----- ----- ----- ----- <u>109명(6급 50명, 7급 2명, 8급 57명)</u> -----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삭 제>

<u>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1명 및 세무주사보 3명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기획재정부령 제81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1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득과악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삭 제></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18</u>		<u>919</u>		+1
		•	•		•		
		•	•		•		
일반직계			<u>914</u>		<u>915</u>		+1
		•	•		•		
		•	•		•		
세무주사보			<u>165</u>		<u>166</u>		+1
		•	•		•		
		•	•		•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982</u>	<u>20,471</u>	+489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9,932</u>	<u>20,421</u>	+489
일반직 계	<u>19,932</u>	<u>20,421</u>	+489
·	·	·	
·	·	·	
세무주사	<u>4,235</u>	<u>4,339</u>	+104
·	·	·	
·	·	·	
세무주사보	<u>4,429</u>	<u>4,542</u>	+113
·	·	·	
·	·	·	
세무서기	<u>5,246</u>	<u>5,400</u>	+154
·	·	·	
·	·	·	
세무서기보	<u>3,525</u>	<u>3,662</u>	+137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7</u>	<u>33</u>	+6
·	·	·	

방호서기보	<u>150</u>	<u>151</u>	+1
·	·	·	
·	·	·	
운전서기보	<u>158</u>	<u>159</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35</u>	<u>33</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467</u>	<u>442</u>	-25
·	·	·	
·	·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084</u>	<u>20,580</u>	+49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20,034</u>	<u>20,530</u>	+496
일반직 계	<u>20,034</u>	<u>20,530</u>	+496
·	·	·	
·	·	·	
세무주사	<u>4,273</u>	<u>4,383</u>	+110
·	·	·	
·	·	·	
세무주사보	<u>4,430</u>	<u>4,544</u>	+114
·	·	·	
·	·	·	
세무서기	<u>5,268</u>	<u>5,422</u>	+154
·	·	·	
·	·	·	
세무서기보	<u>3,525</u>	<u>3,662</u>	+137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7</u>	<u>33</u>	+6
·	·	·	

방호서기보	<u>150</u>	<u>151</u>	+1
·	·	·	
·	·	·	
운전서기보	<u>158</u>	<u>159</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35</u>	<u>33</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467</u>	<u>442</u>	-25
·	·	·	
·	·	·	